

■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0. 8. 28.>

내수면 면허어업의 명칭·방법 및 규모 (제4조 관련)

어업의 종류	어업의 명칭	어업의 방법 및 규모
정치망어업	정치망어업	수면적 500헥타르 이상의 댐·호수·늪·저수지 및 하천에 각망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공동어업	공동어업	손 또는 어구를 사용하여 공동으로 수산동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어업